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24호(號) 1934(昭和 9)년 10월 8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02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8호(號)(내선만대여객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旅客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10월 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10월 8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7조(條) 중(中) 「및 제71조(條)」를 「, 제71조(條) 및 제73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9조(條) 중(中) 「및 제72조(條)」를 「, 제72조(條) 및 제74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